납부자 자동이체 약관 개정 대비표

1. 약관명 : 납부자 자동이체 약관
2.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여
3.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 1조 약관의 적용 ~ 제 5조 (출금일 및 입금일) <생 략> **제6조(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)**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.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(잔액 증명서 발급, 연체, 법적 지급제한 등)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(납부자 자동이체의 경우 고객 교부용장표에 부분출금 불가 내용 기재하는등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). **제 7조(출금우선순위) ~ 별첨 <생 략>**	**제 1조 약관의 적용 ~ 제 5조 (출금일 및 입금일) <좌 동>** **제6조(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)**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.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(잔액 증명서 발급, 연체, 법적 지급제한 등)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(납부자 자동이체의 경우 고객 교부용장표에 부분출금 불가 내용 기재하는등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)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 **제 7조(출금우선순위) ~ 별첨 <좌 동>**	-단서 신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책임 문구추가

4. 약관의 변경

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5. 시행일 : 2022년 7월 29일 (금)